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내운반차

2024-교육혁신실-856

제2편 안전기준

제1장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제184조, 제185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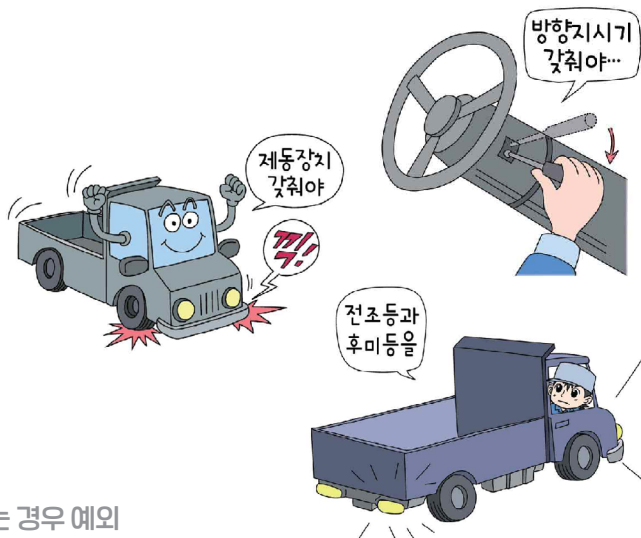
1 구내운반차

- 하역 운반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주로 사업장 내에서 주행하는 운반차
 - 구내운반차에는 견인 차량에 의해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방식, 3륜차 방식 및 근로자가 주행하면서 운전하는 방식 포함

2 구내운반차 안전조치

1 제동장치 등 (안전보건규칙 제184조)

- 구내운반차* 사용 시 부수장치 요건
 - *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
- 제동장치
 - ※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
- 경음기
- 방향지시기(좌우에 한 개씩)
 - ※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경우
- 전조등과 후미등
 - ※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외



2 연결장치 (안전보건규칙 제185조)

-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 사용



[참고] 함께 볼만한 공단 개발 콘텐츠

- 현장작업자를 위한 하역운반기계 작업안전 (2015-교육미디어-775)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(지게차/구내운반차) (2015-교육미디어-660)